

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2019년 제1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

일시 : 2019년 03월 28일 (목) 오후 2시

장소 :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, 6층(개포동, 서울강남우체국빌딩)서울투자운용(주) 본사회의실

출석주식수 :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 26,260,000주 중 26,260,000주(100.00%)

출석주주수 : 총 2명 중 2명

의장인 법인이사로부터 임시의장으로 지정된 박창윤은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주주총회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. 이어 의장은 주주총회 보고사항을 주주에게 보고한 후,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보고사항

영업보고, 감사보고, 외부감사 선임보고

제1호 의안: 제1기 재무제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

의장은 제1기 재무제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,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이에 서면의결권을 포함한 출석주주 전원은 면밀히 검토한 후 [별첨1]과 같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다.

제2호 의안: 정관 변경의 건

의장은 정관 변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, 본 의안을 상정하여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이에 서면의결권을 포함한 출석주주 전원은 면밀히 검토한 후 [별첨 2]와 같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다.

제3호 의안: 제2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

의장은 제2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, 본 의안을 상정하여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이에 서면의결권을 포함한 출석주주 전원은 면밀히 검토 한 후 원안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하다.

제4호 의안: 총 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확정 의 건

의장은 총 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확정 의 건을 상정하고, 부동산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회사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%이하로 한다는 것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이에 서면의결권을 포함한 출석주주 전원은 면밀히 검토 한 후 원안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하다.

제5호 의안: 이사 보수 승인의 건

의장은 이사 보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, 본 의안을 상정하여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이에 서면의결권을 포함한 출석주주 전원은 면밀히 검토 한 후 원안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하다.

- 아 래 -

□ 이사 보수

- 지급대상 :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감독이사
- 지급시기 : 분기별로 합산 지급 (1년 4회 지급)
- 보수금액 : 월30만원
- 퇴직위로금: 없음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.

2019년 03월 28일

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법인이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(인)



[별첨1]

1. 재무상태표

제 1(당)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

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(단위:원)

과목	제 1(당) 기	
자 산		
I. 유동자산		130,671,854,824
1. 현금및현금성자산	130,671,200,000	
2. 부가세대급금	654,824	
II. 비유동자산		-
자 산 총 계		130,671,854,824
부 채		
I. 유동부채		19,938,189
1. 미지급비용	19,938,189	
II. 비유동부채		-
부 채 총 계		19,938,189
자 본		
I. 자본금		131,300,000,000
1. 보통주자본금	300,000,000	
2. 우선주자본금	131,000,000,000	
II. 자본조정		(641,688,603)
1. 주식할인발행차금	(641,688,603)	
III. 결손금		6,394,762
1. 미처리결손금	6,394,762	
자 본 총 계		130,651,916,635
부 채 및 자 본 총 계		130,671,854,824

2. 손익계산서

제 1 기 2018 년 08 월 28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

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(단위:원)

과 목	제 1(당) 기	
I. 영업수익		-
II. 영업비용		6,394,762
1. 자산관리수수료	4,076,087	
2. 자산보관수수료	652,174	
3. 사무수탁수수료	1,304,348	
4. 지급수수료	362,153	
III. 영업손익		(6,394,762)
IV. 영업외수익		-
V. 영업외비용		-
VI.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		(6,394,762)
VII. 법인세비용		-
VIII. 당기순손익		(6,394,762)



3. 자본변동표

제 1 기 2018 년 08 월 28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

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(단위:원)

과 목	자 본 금	자 본 조 정	이 익 잉 여 금	총 계
I. 2018.08.28	-	-	-	-
II. 변 동 내 역				
1. 보통주발행	300,000,000	-	-	300,000,000
2. 우선주발행	131,000,000,000	-	-	131,000,000,000
3. 주식할인발행차금	-	(641,688,603)	-	(641,688,603)
4. 당기순손익	-	-	(6,394,762)	(6,394,762)
III. 2018.12.31	131,300,000,000	(641,688,603)	(6,394,762)	130,651,916,635

4. 결손금처리계산서

제 1 기 2018 년 08 월 28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
처분확정일: 2019 년 3 월 28 일

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(단위:원)

과 목	제 1(당) 기	
I. 미처리결손금		6,394,762
1. 당기순손실	6,394,762	
II. 결손금처리액		-
III.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		6,394,762

5. 현금흐름표

제 1 기 2018 년 08 월 28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

주식회사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(단위:원)

과목	제 1(당) 기	
I.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	-
1. 당기순손익	(6,394,762)	
2.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	-	
3. 현금유출이 없는 수익의 차감	-	
4.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·부채의 변동	6,394,762	
가. 부가세대급금의 감소(증가)	(654,824)	
나. 미지급비용의 증가(감소)	7,049,586	
II.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	-
1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	-	
2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	-	
III.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	130,671,200,000
1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	131,300,000,000	
가. 보통주 납입	300,000,000	
나. 우선주 납입	131,000,000,000	
2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	628,800,000	
가. 주식발행비용	628,800,000	
IV.현금의 증감(I+II+III)		130,671,200,000
V.기초의 현금		-
VI.기말의 현금		130,671,200,000

[별첨2]

1. 정관변경 신.구 대비표

당 초	변 경
<p>제25조 (주주총회의 결의사항)</p> <p>① 관계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0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당 영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다만 두 기의 영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영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영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. 2. 해당 영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. 자산의 투자·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체결에 관한 사항 4.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.(후략) <p>제47조 (영업연도)</p> <p>①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②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12월 31일에 종료한다.</p>	<p>(신규) 제2장 총칙</p> <p>(제1조~제5조에 해당하는 장 제목 기준 정관 누락으로 신규 삽입)</p> <p>제25조 (주주총회의 결의사항)</p> <p>① 관계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0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당 영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다만 두 기의 영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영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영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. 2. 해당 영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. 자산의 투자·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체결에 관한 사항 4. (신규)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법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서 정한 주주 배당수익이 30%이상 하락할 것이 예상되거나 총자산의 30% 이상 부동산 증권을 처분하는 계약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득한다. 다만 총자산의 30% 이상 부동산 또는 증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경우 법 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. 5.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.(후략) <p>제47조 (영업연도)</p> <p>①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.</p> <p>②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12월 31일에 종료한다.</p>